

국립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학술지 연구윤리지침

제정 2007년 06월 30일

개정 2010년 06월 14일

개정 2013년 12월 20일

개정 2026년 04월 27일

개정 2026년 06월 15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학술지 『도서관문화』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그 조사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도서관문화』에 논문 등을 투고하거나 게재하는 자, 학술지의 편집에 관여하는 자, 논문 심사에 참여하는 자 및 연구윤리 관련 조사·심의에 참여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일반적인 학술윤리 기준에 따른다.

제4조(연구윤리 준수의무) ① 투고자, 편집위원, 심사위원 및 연구윤리 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자는 연구윤리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서약을 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공정성과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투고자, 편집위원, 심사위원 및 연구윤리 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자는 젠더 혁신 정책에서 추진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저자의 자격과 책임) ① 저자는 연구의 기획, 수행, 분석 또는 논문 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로 한다.

- ②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저자의 역할과 기여 정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③ 제1저자는 연구 및 논문 작성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자로 한다.
- ④ 교신저자는 논문의 투고, 심사, 수정 및 출판 과정 전반을 총괄하는 자로 하며, 공동저자와의 연락 및 최종 원고 확인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⑤ 공동저자의 표시 순서는 연구 참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하되, 각자의 상대적 기여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⑥ 교신저자는 공동저자 전원에게 최종 원고를 회람하고 투고 사실 및 수정 사항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⑦ 인공지능 도구는 논문저자의 자격을 가질 수 없으며, 인공지능 도구를 저자로 표시하는 행위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에 해당한다.

제6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이 지침에서 “연구부정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논리, 문장,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이미지 또는 저작물을 정당한 인용이나 출처표시 없이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2. 위조: 존재하지 아니하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3. 변조: 연구 재료·장비·과정 또는 자료를 인위적으로 조작·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4. 중복게재: 이미 발표되었거나 게재 예정 또는 심사 중인 자신의 연구물을 정당한 표시 없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으로 다시 게재하는 행위
5.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아니한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행위
6. 부당한 인공지능(AI) 도구 활용: 챗봇·생성형 AI 등 각종 인공지능 도구를 이용하여 존재하지 않는 자료·연구결과를 생성하거나, 자료와 연구를 변형·왜곡하는 행위. 단, 연구자는 논문 작성 과정에서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한 경우 그 사실과 활용 범위를 논문 내에 명시하여야 함. 이때 맞춤법 교정·번역 보조 등 단순 보조적 용도로 활용한 경우는 예외로 함
7. 그 밖의 부정행위: 연구윤리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로서 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행위

제7조(표절의 판단기준) ① 표절 여부는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이 지침에 따라 판단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절로 볼 수 있다.

1.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핵심 개념 또는 문장을 인용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
2. 출처를 표시하였더라도 인용된 내용이 새로운 저작물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는 경우
3. 타인의 연구계획서, 연구노트 또는 연구성과를 직접적 관여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한 경우
4. 번역 또는 표현의 일부 변경만으로 타인의 연구성과를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
5.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하여 작성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자신의 독창적 연구 성과처럼 제출하는 행위

제8조(중복게재의 제한) ① 투고자는 이미 발표되었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투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신의 석사학위논문 또는 박사학위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논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하되 새로운 학술적 논점과 분석을 추가한 경우에는 중복게재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작성 경과와 선행 발표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제9조(부당한 저자 표시의 금지) ①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아니한 자를 제1저자, 공동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논리적·과학적·기술적 또는 자료적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논문의 저자 중 미성년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포함된 경우에는 투고 시 그 사실과 기여 내용을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의 사항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제10조(편집위원의 윤리)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적절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게재 여부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편집위원은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 개인적 친분 또는 선입견과 관계 없이 논문의 학문적 수준과 투고규정 및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③ 편집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④ 편집위원은 게재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저자 정보와 논문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심사위원의 윤리)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의뢰한 논문을 심사기준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자신이 해당 논문을 심사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개인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 ④ 심사위원은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게재불가 의견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인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 ⑥ 심사위원은 심사 중 논문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할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 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2조(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연구원은 학술지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및 심의를 위하여 국립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학술지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연구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의 임기, 위촉 절차 및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조사 개시 여부에 관한 사항

3. 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사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4. 연구부정행위 판정 및 제재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5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연구부정행위 판정은 제24조에 따른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해당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사안의 조사,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은 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기피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제17조(조사의 개시) ①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상당한 의혹이 있는 경우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제보 또는 의혹 제기 이후 본조사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 예비조사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예비조사 결과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본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9조(본조사)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한다.

② 본조사는 예비조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연구부정행위의 입증책임은 위원회에 있다. 다만, 피조사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자료를 고의로 훼손·은닉·파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1조(조사시효)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시효는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할 수 있다.

1. 5년 이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결과가 최근 5년 이내의 연구기획, 연구수행, 연구비 신청, 연구결과 보고 또는 발표에 사용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2조(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조사 완료 전까지 피조사자의 명예와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피조사자는 최종 판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조사와 관련된 모든 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23조(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반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24조(판정)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와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진술, 이의제기 또는 반론 내용을 종합하여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②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제25조(제재의 종류) ①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그 행위의 정도, 고의성, 반복성 및 학술지의 신뢰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를 할 수 있다.

1. 경고 또는 주의
 2. 논문의 수정, 정정 또는 보완 요구
 3. 논문 게재의 취소 또는 소급 무효화
 4. 논문목록에서의 삭제
 5. 일정 기간 투고 제한
 6. 위반 사실의 공지
 7. 한국연구재단 또는 소속기관에 대한 통보
 8. 그 밖에 연구윤리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② 제1항에 따른 투고 제한 기간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정하되,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10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6호에 따라 위반 사실을 공지하는 경우에는 저자명, 논문명, 게재권·호, 취소일자 및 취소이유를 포함할 수 있다.

제26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피조사자 및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재심의)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 절차는 본조사 및 판정 절차를 준용한다.

제28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재심의 또는 그 밖의 절차를 통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된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 또는 혐의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9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판정이 끝난 이후 그 결과는 연구원장과 해당 학술지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보자, 조사위원, 참고인 및 자문 참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공개로 인하여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